

## 소규모펀드현황 공시 - 비율공시

자본시장법 제 89 조, 동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4 호 및 제 5 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규모펀드 수시 공시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 
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.

기준일자 :2020.05.30

공모추가형 펀드수(운용펀드기준)					소규모 펀드수					소규모 펀드 비율 (=J/E)
전체(A)	제 4 조 제 3 항 제 1 호 펀드(B)	제 4 조 제 3 항 제 2 호 펀드(C)	제 4 조 제 3 항 제 3 호 펀드(D)	차감 계 (E=A-B-C- D)	전체 (F)	제 4 조 제 3 항 제 1 호 펀드(G)	제 4 조 제 3 항 제 2 호 펀드(H)	제 4 조 제 3 항 제 3 호 펀드(I)	차감 계 (J=F-G-H-I)	
8	4	0	2	2	5	3	0	2	0	0

\* 제 4 조제 3 항제 1 호펀드 - 부실자산펀드

\* 제 4 조제 3 항제 3 호펀드 - 조세특례제한법 세제혜택펀드

\*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소규모 펀드 수는 모자형 구조인 경우는 모펀드 기준으로, 종류형 펀드의 경우 운용펀드 기준으로 하여 합산하여 기재함.

\* 관련 모범규준 제 2 장 제 4 조 3 항에 따라, 부실자산 펀드는 공모추가형펀드 및 소규모펀드 수 산정시 제외한다.

\* 기준일 현재 당사 부실자산펀드는 총 4 개임, 그 중 소규모펀드는 3 개임.

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